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동물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·정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 및 제5조)
- 인용조문 정비(안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20조)
- 상위법 반영 명칭 변경(안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20조)
 - 생활공원 → 생활권공원
 - 동물보호관리시스템 →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- 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및 첨부서류 정비(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9조, 제12조~제15조, 제20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.
 - ※ 생활공원 → 생활권공원
 - ※ 동물보호관리시스템 →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 -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변경신고 사유에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 신설하고
 -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변경신고시 첨부 서류를 규정함.
 - ※ 상위법을 반영하여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“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”를 삭제하고 “동물등록증”만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